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22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촉진에 관한 규정

제정 2018. 1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 범위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범위는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말한다.

제3조(지역사회협력위원회)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별표 1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장이 되고,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 · 기여 활동에 대한 수요 분석

- 2. 지역사회 협력 · 기여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
- 3. 지역사회 협력 · 기여 활동에 대한 지원
- 4. 지역사회 협력ㆍ기여 활동에 대한 개선 및 보완
- 5. 기타 지역사회 협력 · 기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계획의 수립) ① 대외협력본부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를 위한 연도별 총괄 운영계획을 대내·외 수요 분석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작성 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년 2월에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역기업(산업) 연계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
- 3. 지역사회 평생교육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
- ③ 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대외협력본부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계획의 추진) ① 대외협력본부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업무 유형별 기본적인 업무분담은 별표 1과 같이 정하되, 구체적 활동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추진실적 종합분석) ① 담당부서의 장은 개별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담당부서의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매년 종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제9조(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환류) ① 대외협력본부장은 종합 분석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.
- ③ 대외협력본부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(2018. 1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부서별 업무분담표

업무 유형	주요내용	담당부서
지역기업(산업) 연계	 ▶ 지역인재 양성 노력 ▶ 지역기업 연계(계약학과, 채용약정, 주문식 교육과정 등) ▶ 지역산업 발전 기여 노력 ▶ 창업 활성화 지원 	산학협력단, 창업지원단
지역사회 봉사	 ▶ 지역 학생(초·중·고) 지원 ▶ 영·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▶ 주민 시설 개방 및 지역 문화 선도 활동 ▶ 노인 · 장애인 · 청소년 복지 	학생처, 대외협력본부 사무국 도서관
지역사회 평생교육 제공	 ▶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 ▶ 만학도, 교양 목적 등 성인학습자 교육 ▶ 직장인 재교육 수요 발굴 및 제공 	평생교육원, 미래융합대학
지자체 협력	 ▶ 지역종합발전계획 하에서 대학의 역할 및 기능 부여 ▶ 지자체 사업 지원, 전문인력 제공 등 	대외협력본부